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17쪽 중 1쪽)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직장 ()	전자우편주소	
	주소	자택 (-)	거주형태	
직장 (-)				

등록 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재산등록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현금·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그 밖의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신규 / ()승진]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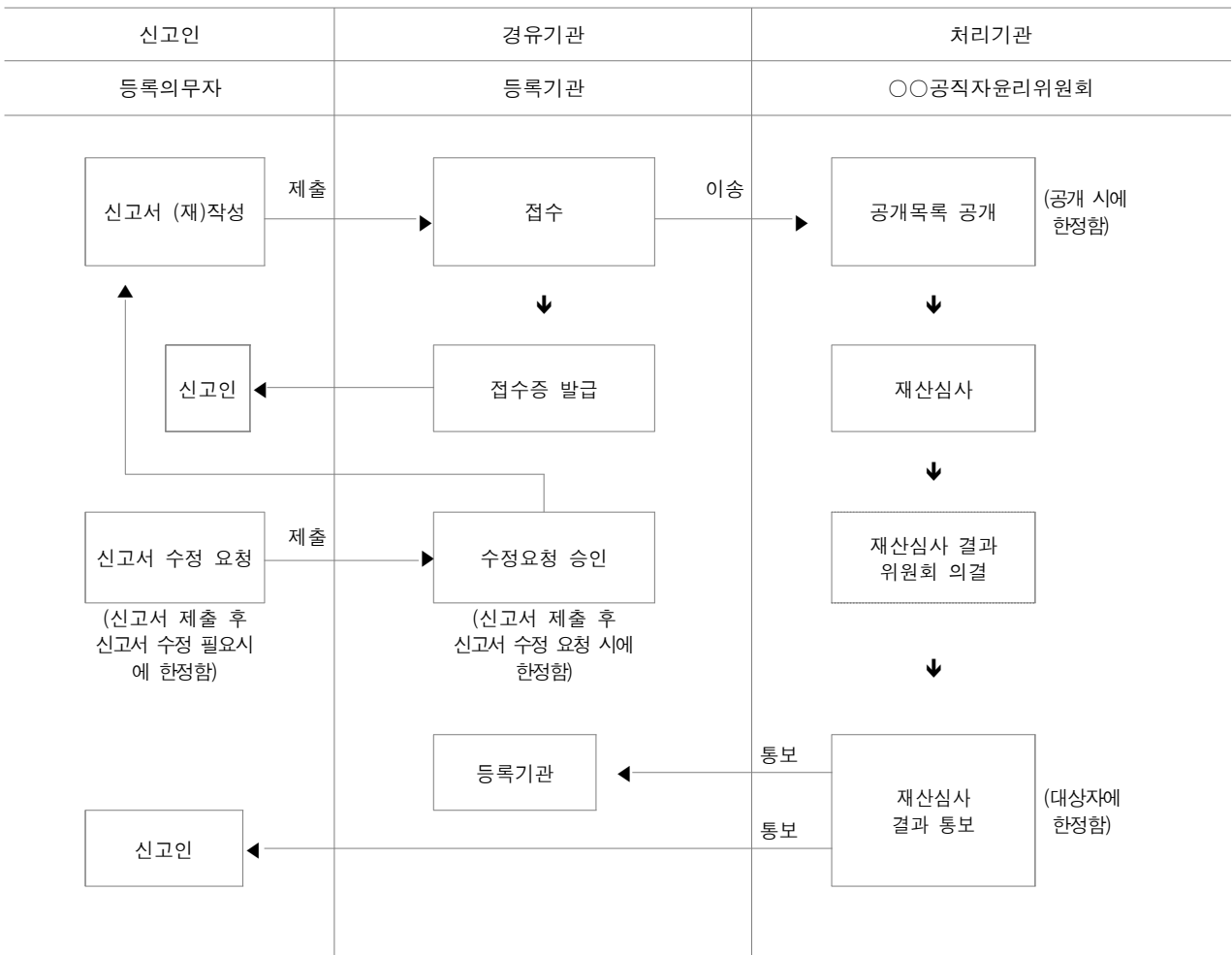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친족사항(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거주형태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으십시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 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 격)	형성과정	비고
▶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작성방법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백금: 종류·함량·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어업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제외한다}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지목'란 작성방법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자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 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②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했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적으십시오.
10.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취득 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③ 건설기계: 기종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②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다만,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6.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기관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계좌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기타 비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 증권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적으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이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이 주식이 아닌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액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적으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
3. '채권의 종류' 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5.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 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 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번호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 란에 "금융기관명" 을 적으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 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 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품명' 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5. '크기' 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적으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 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 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소재지' 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 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 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 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 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매출액(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출자가액' 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 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적으십시오.
3. '회사연간매출액' 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 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적으십시오.
4. ‘보유직위’ 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 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8. 가상자산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	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종목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5.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6.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